



상속관련법률이해

상속 관련 분쟁과 법적 해결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 변호사 양희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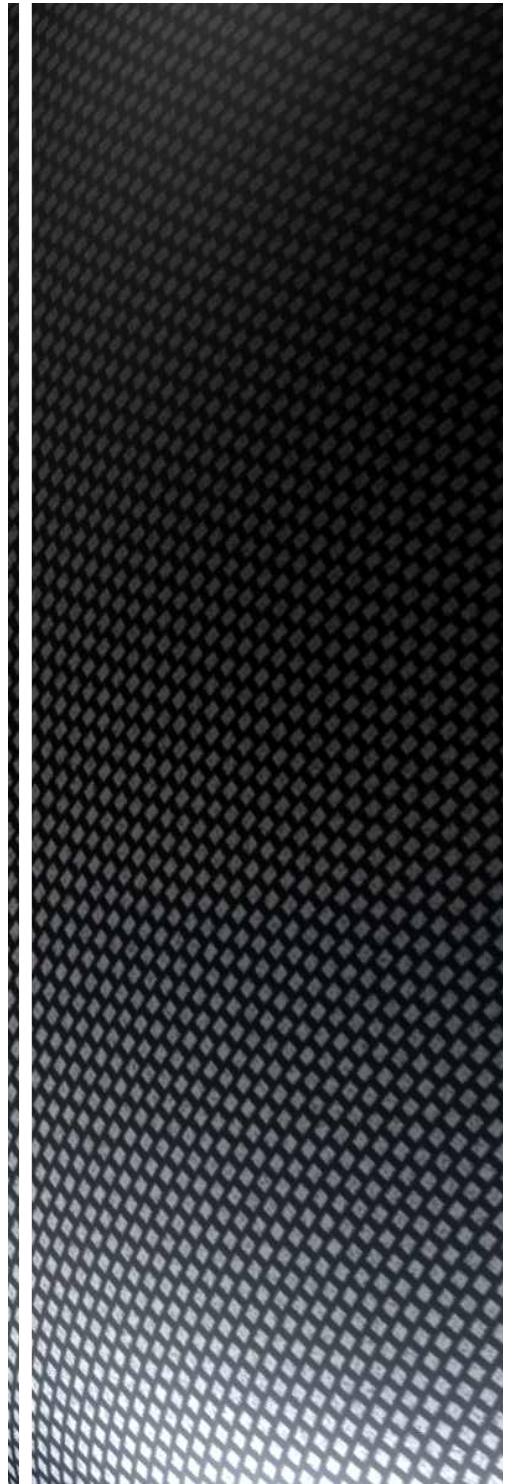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목 차

- 1. 상속인
- 2. 상속인의 자격
- 3. 상속의 효과
- 4. 상속의 승인·포기·한정승인
- 5. 상속재산의 분할
- 6. 유언
- 7. 유류분



1. 상 속 인

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1. 상속인

민법 제1000조

① 상속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수인이 동순위인 경우 최근친 선순위, 동친이 수인인 때 공동상속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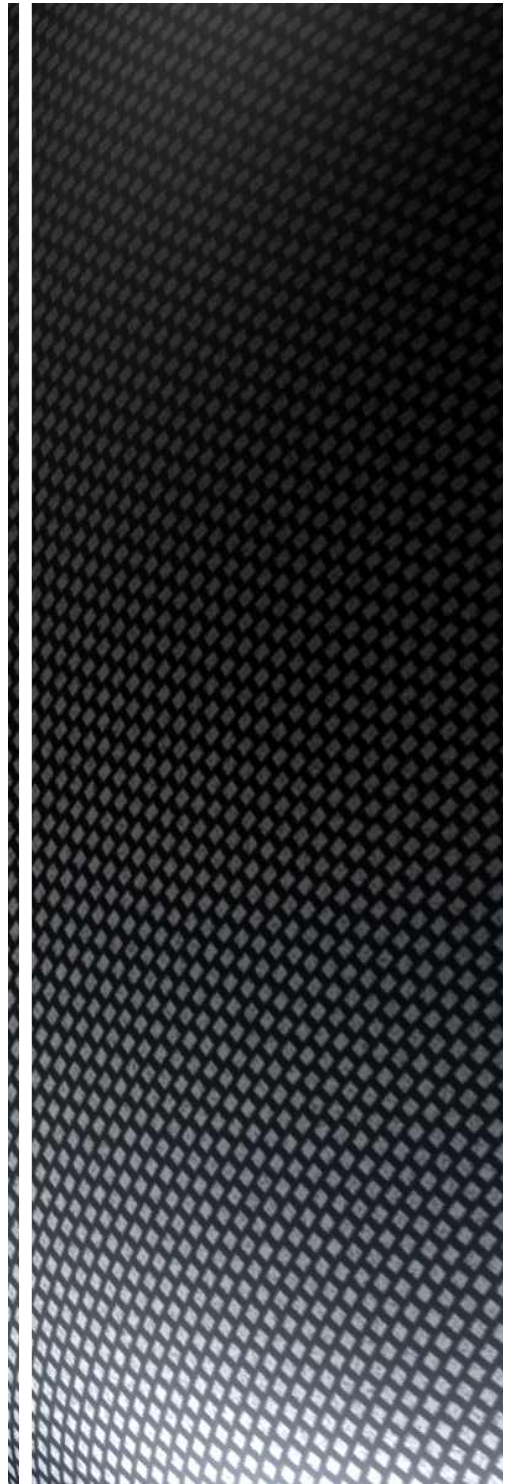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존재시 동순위로,
부존재시 단독상속인



2. 상속인의 자격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2. 상속인의 자격

(1) 상속결격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1.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선·동순위 상속인 **살해시**
2.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상해해 사망시**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 관련 **유언 또는 그 철회 방해시**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이 **유언하게** 한 때
5.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시**



2. 상속인의 자격

(2) 상속회복청구권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 침해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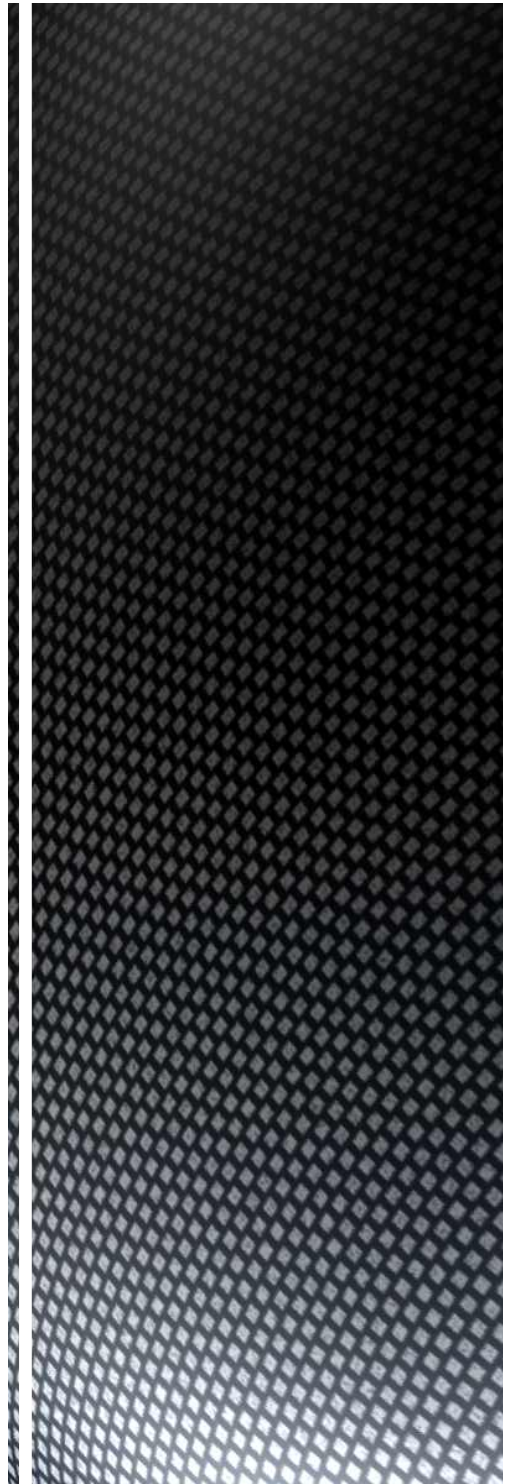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②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을 날부터 10년** 이내 행사 필요

→ 기간 경과시 소멸



3. 상속의 효과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 그 효과는?





3. 상속의 효과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해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 공유**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3. 상속의 효과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시 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미달 부분 한도에서 상속

★ 생전 증여와 유증

대법원97므513,520,97스12판결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그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인지로 결정



3. 상속의 효과

대법원2006스3,4결정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경우만 상속분 산정시 참작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지만,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직접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 특별수익으로서 고려

대법원2010다66644판결

배우자가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반려자로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을 양육 및 지원시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의미가 있어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 공평을 해치지 않음



3. 상속의 효과

★ 이른바 ‘효도계약’ 문제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서면으로 증여*하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제 가능*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증여자는 수증자가 ① *증여자,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시, ②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 불이행시 *해제가 가능*하나, 그 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이 지나거나 수증자를 *용서*시 *해제권 소멸*



3. 상속의 효과

제558조(해제와 이행완료부분)

증여 해제시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이 없음*

제561조(부담부증여)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15. 12. 26. 선고 대법원 판결 : 효도계약 불이행시 무효

대법원은 서면으로 증여할 당시 부양하기로 한 조건 불이행으로
증여계약 무효화 판결

→ 효도계약 불이행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라.



3. 상속의 효과

제1008조의2(기여분)

-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으면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상속분**으로 함
- ②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기여분을 정함
- ③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한도내** 결정



3. 상속의 효과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특별부양, 상속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한 기여한 자에게 구체적 상속분 인정해 주는 제도

기여분 평가 시점은?

→ 상속개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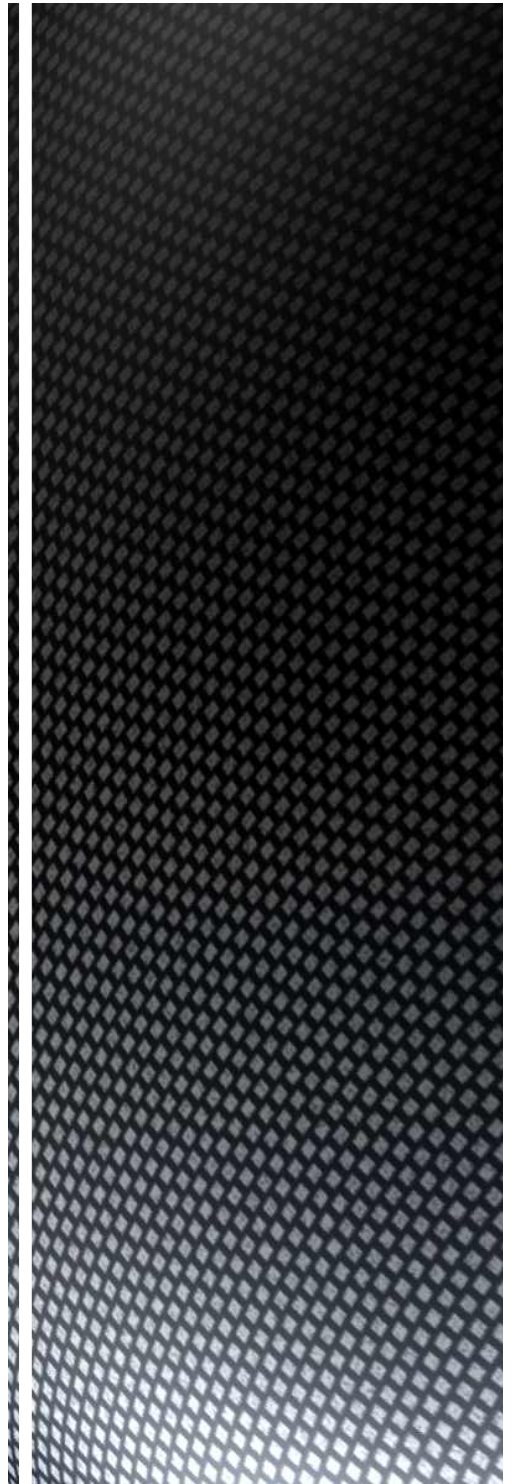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기준이 되는 재산 범위는?

→ 적극재산



4.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

상속을 원치 않는 경우 대처는?





4.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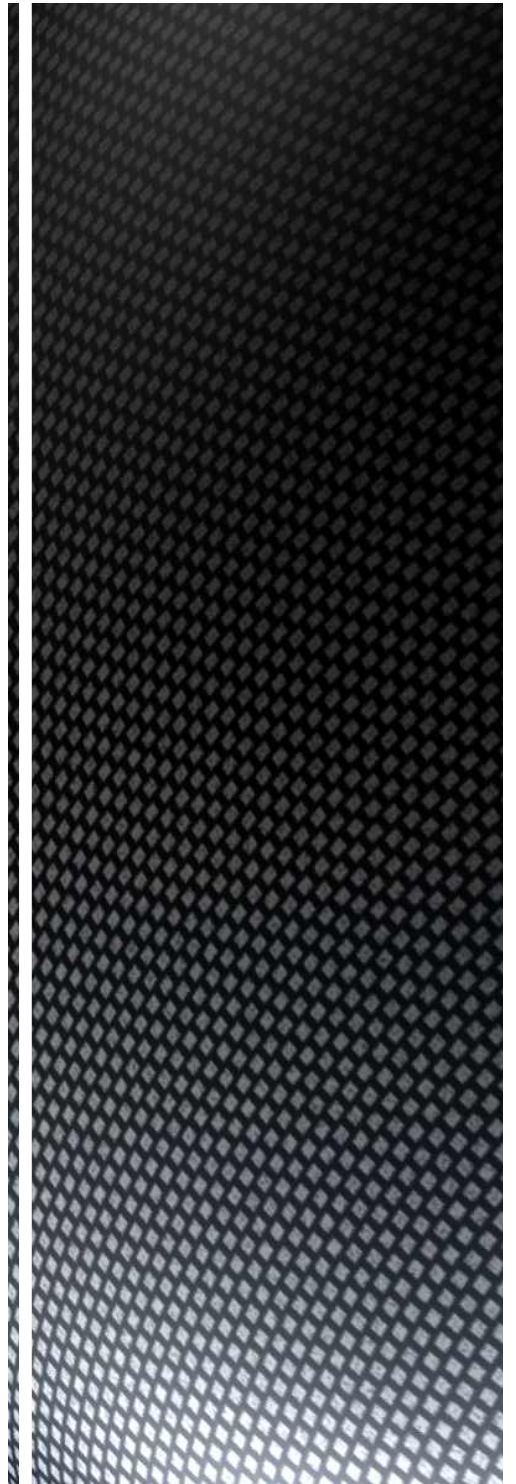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 가능
- ②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 전 상속재산 조사 가능
- ③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 의제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가능**



5. 상속재산의 분할

내 몫의 상속재산은 얼마?





5. 상속재산의 분할

(1) 상속재산 분할방법

제1013조(협의를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공유물 분할의 규정 준용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협의 분할이 되지 않으면 공유자가 법원에 분할 청구

② *현물 분할 원칙, 예외적 대금분할·가액분할*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



5. 상속재산의 분할

(2) 분할대상 상속재산

생명보험청구권?	
유족급여?	X
임차권?	○
불가분•가분채권?	불가분 : ○, 가분 : X
불가분•가분채무?	불가분 : ○, 가분 : X
상속재산 매각대금?	○
과실?	X
부의금•장례비용?	○
상속세?	



5. 상속재산의 분할

(3) 상속재산 분할액 및 평가시점

★ 구체적 상속분

증여, 유증 등 특별수익 받은 자 있는 경우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법정 상속분을 수정한 각 상속인별 상속분

실제 상속재산분할은 **분할심판시** 기준으로 산정

실무상 현물분할 원칙, 차액 정산에 따른 대상분할, 가액분할 가능



5. 상속재산의 분할

(4) 상속재산 분할 기준

- ① 간주상속재산 : $\text{상속개시 당시 재산} + \text{생전 증여(특별수익만)} - \text{제3자 유증액} - \text{기여분}$
- ② 법정상속분액 : $\text{간주상속재산} \times \text{법정상속분}$
- ③ 수정된 상속분액 : $\text{법정상속분액} - \text{특별수익}$
- ④ 구체적 상속분액 : $\text{수정된 상속분액} + \text{기여분}$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 분할 사례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상속인은 부인과 자녀 3명
재산 상황은 상속개시시 상속재산 9억원, 자녀1의 기여분 9천만원, 자녀2에게 생전 증여 1억 8천만원

① 간주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 생전 증여(특별수익만) - 제3자 유증액 - 기여분
→ 9억 9천만원(9억원 + 1억 8천만원 - 9천만원)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 분할 사례

②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 법정상속분

→ 부인 : 9억 9천만원 × 3/9 = 3억 3천만원

자녀1 : 9억 9천만원 × 2/9 = 2억 2천만원

자녀2 : 9억 9천만원 × 2/9 = 2억 2천만원

자녀3 : 9억 9천만원 × 2/9 = 2억 2천만원



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 분할 사례

③ 수정된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 특별수익

→ 부인 : 3억 3천만원

자녀1 : 2억 2천만원

자녀2 : 2억 2천만원 - 1억 8천만원 = 4천만원

자녀3 : 2억 2천만원

④ 구체적 상속분액 : 수정된 상속분액 + 기여분

→ 부인 : 3억 3천만원

자녀1 : 2억 2천만원 + 9천만원 = 3억 1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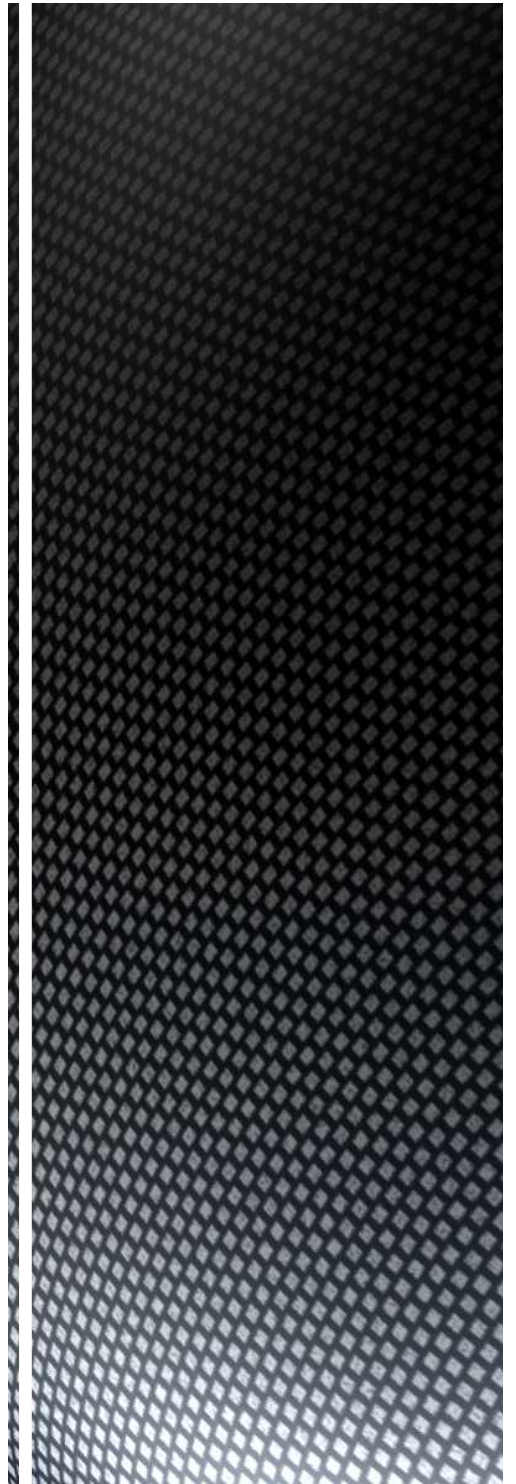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자녀2 : 4천만원 (생전 증여 1억 8천만원 그대로 보유)

자녀3 : 2억 2천만원



6. 유연

누구에게 재산을 나눠줄까?





6. 유언

(1) 유언의 방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되,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시에도 동일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말하는 것을 녹음**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



6. 유언

(1) 유언의 방법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해 2인 이상 증인에게 확인받고,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해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②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음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유언자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 2인 이상 증인이 참여해 증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이를 필기낭독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②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6. 유언

(2) 증인의 자격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유언의 공정성 확보 차원

(3) 지정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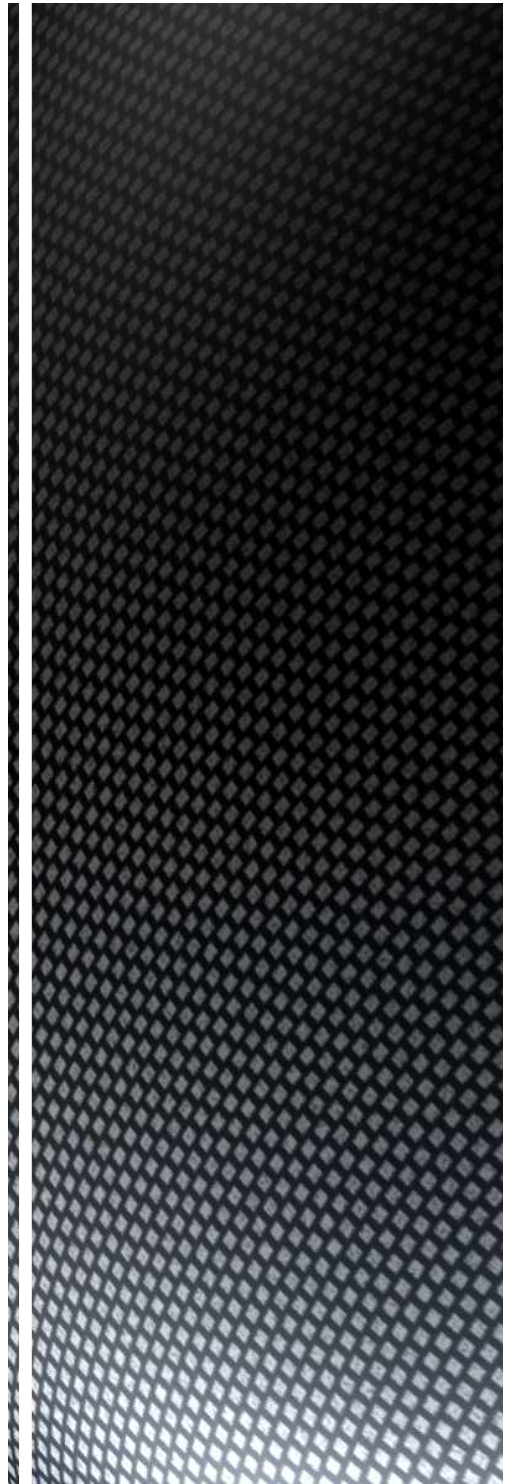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정하거나 제삼자에게 위탁 가능



7. 유류분

상속을 전혀 못 받는 건 억울하다!!





7. 유류분

(1)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부분을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도 침해 받지 않도록 반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상속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

(2) 유류분 청구권자와 유류분액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7.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피상속인 상속개시시 **상속재산에 증여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

제1114조(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 증여에 한하여 산입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시 1년 전 증여도 산입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유류분권리자는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 발생시 **부족 한도에**서 **반환 청구 가능**하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이면 받은 가액의 **비례**로 반환



7. 유류분

(3) 유류분의 산정

제1116조(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 증여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제1117조(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



7. 유류분

(4) 유류분의 산정 기준

유류분액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상속개시시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을

유류분 부족액 계산공식

유류분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수증액 +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Q&A

Thank You

법무법인 명륜

파트너변호사 양희철

justiceyang79@gmail.com

<http://myungryun.com>